

---

#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준수립(안)

---



강 원 도  
(관광마케팅과)

#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준수립(안)

❖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체적 기준 수립을 통한 정책추진의 명확성 및 효과성 제고 도모

## 1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2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체 경영난 가중에 따라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
  - \* 조례 제4조 제7호 신설 :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모호함에 따라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한 정책추진의 명확성 및 효과성 제고 필요

## 3 지원대상 및 실적

### □ 지원대상 (조례 제4조)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2.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3.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4.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5. 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6. 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7.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20. 11. 6. 신설

## □ 지원실적 ('21. 상반기)

- 35개 업체(기존 33, 신규 2) 대상, 이차보전금 83,651천 원 지원
  - (1분기) 35개 업체, 46,772천 원
  - (2분기) 35개 업체, 36,879천 원

< 최근 5년('16~'20년) 간 지원 실적 >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체수	13	6	9	7	10	34	35
용자액	1,831	620	1,400	1,190	1,600	4,349	4,461
이차보전액	35	13	24	31	30	76	145 <sup>(예측)</sup>

## 4 지원기준(안)

### □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기준 차용

-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정의)**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령 제2조타목)
  - \* 관광산업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통계청장의 승인(통계법 제22조 제2항)을 받아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관광산업의 범위 등을 측정하는데에 활용 중임

### ○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기준 차용 사유

#### 가. 관광관련 사업의 일정 범주 설정 필요

- 관광산업의 종합적 성격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그 범주를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통계청장이 승인하는 관광산업 특수분류에서 대다수의 관광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나. “관광지원서비스업”과 “조례 제4조 제7호”의 신설 목적 일치

- **(관광지원서비스업)** 관광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 관련 사업을 관광사업의 한 종류에 포함
  -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19.4.9. 일부개정)
- **(조례 제4조 제7호)** 관광사업의 범주 확장을 통해 신유형 사업체 파악 및 지원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 ※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개정이유('20.11.6. 일부개정)

○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기준 차용에 따른 실익**

가. 기존 규정되어 있는 법적기준 차용으로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도민의 합의 도출 용이

나.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에 소요되는 기간(5~12일 소요)으로 인해 경영안정자금 접수기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업체들의 경우 해당 기준 충족만으로 신청기회 부여

다. 관광지원서비스업에 대한 홍보기능도 겸할 수 있어, 향후 도내 사업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문체부 사업) 대상 확대에 기여

□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4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가. 관광산업특수분류표\*에 해당하는 업종**

\* (붙임1) 관광산업특수분류표 참고 :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 가능

**나. 국내법률에 의한 면허, 허가, 등록, 지정,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해당 법에 따른 면허 등을 받아야 함**

\* 인허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는 기업지원플러스 (<http://www.g4b.go.kr>)

- 사업내용 변경 - 업종별 인허가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참고) 확인 필요한 업종 및 관련 법률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운송업 : 철도사업법, 여객자동차법, 해운법, 항공사업법
- 음식점·카페 등 : 식품위생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 소매업 : 유통산업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서비스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목욕탕업, 온천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온천법
- 보험 및 금융업 : 보험사법, 보험종목별 금융위원회 허가, 외국환거래법,
- 교육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다.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관광진흥법 제7조 적용)

- ①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것**

- ①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제출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련 설명**

-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의미)
- 매출액 규모 : 특정 기준 없음(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50% 기준 적용)
- 매출액 기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름.
- 신규사업체 :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하여 국세청 신고 가능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해당 기간의 매출액만큼을 분석하여 50%가 넘으면 인정 가능.
- 검토방식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한 검토방식 등은 별도 규정하지 않음. (사업자의 자율 판단)  
[예시] 사업체에서 직접 매출액을 분석하여 분류·작성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섭외한 후 검토 요청
- 제출서류 : (붙임 2) 매출액 명세서 및 검토의견서(서식 변경 가능)

②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내 사업장 운영 관련 설명**

- 도내 관광지 및 관광단지 현황
  - 관광지(41) : [춘천] 호반, 구곡폭포, 청평사, [원주] 간현, [강릉] 옥계, 주문진, 연곡, 등명, 대관령 어흘리, [동해] 무릉계곡, 망상, 추암, [태백] 구문소, [속초]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삼척] 장호, 맹방, 삼척해수욕장, 초당, [홍천] 팔봉산, 홍천온천, [횡성] 어답산, 유현문화, [영월] 고씨동굴, 영월온천, 마차탄광문화촌, [평창] 미탄마하생태, [정선] 화암, 아우라지, [철원] 고석정, 직탕, [화천] 광덕계곡, [양구] 후곡약수터, [인제] 내설악용대, 방동약수터, 오토테마파크, [고성] 송지호, 삼포 문암, 화진포, [양양] 오색, 지경
  - 관광단지(14) : [춘천-홍천] 라비에벨, [춘천] 신영, [원주] 오크밸리, 더네이처, 루첸, [속초] 설악한화리조트, [홍천] 홍천비발디파크, [횡성] 웰리힐리파크, 횡성드림마운틴, [평창] 휘닉스파크, 용평, 대관령알펜시아, [고성] 델피노골프앤리조트, [양양] 국제공항
- 인정범위 :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신규창업하고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체도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장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③ 관광진흥법(제48조의10 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 **한국관광품질인증 관련 설명**

- 인정범위 : 유효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로 선정되었음을 증빙한다면 인정 가능
- 제출서류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한국관광품질인증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 **우수 관광사업 관련 설명**

- 인정범위
  -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선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모전에 선정된 해당 상품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과거에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우수관광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까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면 인정
  - 공모전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선정한 경우,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인정 가능
- 제출서류 : 선정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공문 또는 공모선정결과 등 서류)

- ⑤ 시장·군수가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관광지 및 숨은관광지 등으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숙박·음식 등 관광객을 위한 영업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체 관련 설명

- 인정범위 :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장·군수가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체는 인정 가능
- 제출서류 : (붙임 3) 관광 관련 사업체 인정 확인서(시장·군수가 해당 업체를 관광 관련 사업체임을 인정하는 의미의 공문이면 서식 무관 인정)\*
  - \*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자율 판단.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

마.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 관광객의 안전 확보 관련 설명

-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관광객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사업체 시설 관련 안전점검표,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소방관련법 준수 여부, 안전교육 준수 여부, 시설 노후화 여부 등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 ✓ 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관광진흥법」 상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및 기타 관광사업의 등록·허가를 의제하는 것은 아님
-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으로 등록·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5

### 향후일정

- 기준수립(안) 관련 의견조회 : 7. 19.~8. 18.(30일간)
  - 도 및 시군(공문 시행), 도민(홈페이지 게재)
- 기준수립(안) 결정 방침결재 : 8. 31.(화) 까지
- 지원기준 적용 : 2022년 부터 ~

- 붙임
1. 관광산업특수분류표 1부.
  2. 매출액 명세서 및 검토의견서 서식 1부.
  3. 관광 관련 사업체 인정 확인서 서식 1부.
  4. 의견조회 관련 공고문(안) 1부. 끝.



# 붙임1

# 관광산업특수분류표

※ 기존 특수분류표에서 관광진흥법상 업종은 제외하고 정리한 자료임.(기존 특수분류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 및 예시는 부연설명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님)

분류명	분류정의
<b>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b>	<b>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b>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 상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관광인증 쇼핑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종합소매업
관광 비인증쇼핑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소매업은 아니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대중 및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b>관광 운수업</b>	<b>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설비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b>
관광 철도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열차, 테마열차
도시간 철도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객철도운송(도시간), 일반여객운송(철도)
도시내 철도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지하철운송, 모노레일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버스운영, 버스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버스운영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관광 여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기타 산업활동 * <예시> 공항버스운영(정기노선), 리무진버스, 셔틀버스
시내외버스 운송업	도시 및 군의 일정행정 구간 안, 또는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고속버스, 시내노선
택시 운송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됨 * <예시> 택시운송, 승용차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운송
수상운송업	낚시 선박 임대, 잠수선 임대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운송업 * <예시> 낚시선박임대, 잠수선운영, 범선운영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강, 호수, 항만 내에서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내륙여객선임대(승무원 딸린), 내륙수상택시, 여객운송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항공여객운송(정기)
관광 항공 부정기 운송업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 포함) * <예시> 항공여객운송(부정기), 경비행기, 운송항공기임대(조종사 딸린)
<b>관광 숙박업</b>	<b>관광객의 숙박 또는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또는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b>
산림휴양림업	전국에서 수림이 빼어난 곳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청이 조성한 국민휴식공간에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예시> 숲속의집, 휴양관, 연립동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여행자에게 침실을 제공하고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 * 부엌, 샤워룸,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
레지던스 호텔	호텔급 서비스에 다양한 편의시설, 취사시설, 주거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중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말함. 한두 달 정도 머물 외국인, 외지 직장인, 유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며 숙박료는 호텔보다 저렴해야 함 * 레지던스 호텔은 숙박업(생활)으로 영업이 허가됨
관광 인증 모텔업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 * <예시> 품질인증모텔
관광 비인증 모텔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
민박업	일반 가정집에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예시> 민박시설운영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청소년수련원(숙박시설 갖춘), 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춘)
<b>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b>	<b>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즉석식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콜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b>
관광 일반음식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업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산업활동 * <예시> 관광지, 관광단지 내의 커피전문점, 제과점
기타 관광 주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b>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b>	<b>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b> * <예시> 관광안내소, 카플체계운영, 여행자안내서비스 등
<b>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b>	
박물관 운영업 (미술관 포함)	일반대중에게 순수과학물, 응용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역사박물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과학관, 천문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이 포함됨 * <예시> 식물원, 동물원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 * <예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운영
기타 관광지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 * <예시> 천연동굴관리운영
농어촌 체험 및 생태관광업	농어촌 마을에서 2차 산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에게 체험학습 및 생태학습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경주장 운영업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자동차경주장(F1), 투우장(소싸움),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골프장 운영업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음 * <예시> 골프장, 골프강습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음 * <예시> 스키장, 스키강습, 스키장비임대
낚시장 운영업	관광활동의 일환으로 실외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유료낚시터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보트대여) * <예시>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 오락용 보트임대, 해수욕장운영, 요트장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레크리에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b>관광 건설업</b>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관광 관련 사무 및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상업 건물 건설업: 상가·백화점·쇼핑센터 등 관광객이 찾는 시설 건설업, 휴양 건물 건설업: 호텔·숙박시설(별장, 콘도, 산장) 건설업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주차시설, 터미널, 관광토목건설업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관광 택지 조성공사 등의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활동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됨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용지를 제외한 스타디움 또는 경기장 같은 레저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공연·집회장소건설업, 경기장·운동장건설업
<b>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b>	
레저용 의복 소매업	남녀용 운동복, 수영복, 골프의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골프의류, 등산복, 수영복, 스키복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등산장비(텐트포함)소매, 골프장비소매, 스킨다이빙 및 스쿠바장비, 스키장비, 캠핑 및 하이킹장비, 수렵 및 낚시용 장비 소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 * <예시> 자전거유통 및 소매, 개인용 운송장비 유통 및 소매(비동력식)
관광용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관광을 목적으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용 액세서리 소매, 여행용 가방 소매, 트렁크 소매
<b>관광보험및금융 서비스업</b>	
여행자 보험업	여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도난 및 사고에 따른 여객,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자보험
여행자 수표 발행	은행을 위해 수표의 현금화, 여행자 수표의 발행 등과 같이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자수표발행
환전소	은행을 위해 외환교환서비스와 같은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환전서비스, 외국환서비스
<b>레저장비업</b>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카메라 소매, 디지털카메라 소매, 소진필름 소매, 사진장비 소매
레저장비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스키(장비)임대, 자전거임대, 물놀이기구임대, 카누임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상업용보트, 모터사이클, 경비행기, 오락용선박임대, 유람선대여(운전자 없이)
<b>자동차 임대업</b>	
캠핑카임대업	운전자 없이 캠핑카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관광용 자동차임대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용승용차(렌트카)임대, 리무진임대

일반 자동차 임대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b>관광 교육서비스업</b>	
관광 전문 교육기관 (대학교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한 관광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기관
관광 전문 교육기관 (고등학교)	인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고등학교 * <예시> 관광고등학교, 조리과학고등학교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 <예시>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레크레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 * <예시> 바둑교실
<b>기타 서비스업</b>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CD/DVD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여행 정보작성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됨.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거나 서적 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산업활동 * <예시> 지도, 가이드북
통역서비스업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온천탕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족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온천탕, 온천사우나 운영, 찜질방(황토방 포함)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광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
<b>관광 연구 개발업</b>	<b>관광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b>
<b>관광 공공기관</b>	
문화 및 관광행정	문화 및 관광관리행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예시> 문화 및 오락시설 관리, 관광시설의 허가·규제·검사, 여행자 안내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관세행정	금융, 재정, 과세 및 경제정책을 수립·관리하는 기관 * <예시> 면세, 관세청 등 관광여행객들의 관세업무 관련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외교정책과 대외통상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기관 * <예시> 비자발급, 관광 관련 영사업무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시민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각급기관 * <예시> 국가보안담당
<b>관광 단체</b>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회원 간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 <예시> 관광사협동조합, 관광관련 학회, 관광관련 협회
여행클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체 * <예시> 여행클럽, 관광지원봉사단체, 여행동호회, 레저활동동호회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관광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국내 및 외국기관 * <예시> 주한외국대사관, 주한외국관광청

## 매출액 명세서

업무 담당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기준연도(전년도) : 20 . . ~ 20 . . )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객과의 거래	매출액
1. 000 여행사와의 거래	백만원
2. 000 호텔과의 거래	백만원
3. 외국인 거래	백만원
4. 온라인 매출 중 관광객 거래	백만원
5. 일반 관광객 거래	백만원
6.	백만원
A. 관광산업 매출액 총계 (1~6의 합계)	백만원
B.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중 관광산업 매출 비중(A/B)	%

「관광진흥법」 제78조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_\_\_\_\_대표이사 귀하

본 \_\_\_\_\_는 \_\_\_\_\_의 [20 . . . ~ 20 . . . ]  
까지 0000 서식의 「매출액 명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는 매출액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하  
였으며, 이 검토가 검토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본 사의 의견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방법에 따른 것으로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을 적정하  
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자격증: 한국 공인회계사 ( ), 세무사 ( ), 경영지도사 ( )
	검토기관명:
	검토자명:
	(전화번호) (휴대번호)

년 월 일

검토자

(서명 또는 인)

검토기관

직인

## 관광 관련 사업체 인정 확인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업종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상기 업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추천관광지(숨은 관광지) 내에서 관광객을 위한 영업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본 사업체를 관광 관련 사업체로 판단하였기에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검토	시군명		부서명	
	담당자	(직위)	(성명)	
	확인자	(직위)	(성명)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 공고 제2021 - 1424호

###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준수립(안) 의견조회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관광 관련 산업의 지원대상을 정립하고 정책추진의 명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 의견조회 사항 : [붙임 1] 기준수립(안) 참고
  -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4조 제7호에 대한 기준수립(안)
- 의견조회 기간 : 2021. 7. 19.~8. 18.(30일간)
- 의견제출 기한 : 2021. 8. 18.(수) 18:00까지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서식 참고
- 의견제출 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제출 금지
  -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2청사 관광마케팅과(우 24265)
  - 팩스 : 033-249-4049
    - ※ 팩스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033-249-3363)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의견제출자에게 있음
  - 이메일 : les207@korea.kr

- 붙임 1. 기준수립(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4조 제7호에 대한 기준수립(안)

### □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조례 제4조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2.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3.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4.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5. 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6. 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7.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0. 11. 6. 신설)

### □ 조례 제4조 제7호에 대한 세부기준

⇒ 다음 ‘가 ~ 마’ 요건(「관광진흥법」상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기준’ 차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가. 관광산업특수분류표\*에 해당하는 업종

\* (붙임1) 관광산업특수분류표 참고 :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 가능

#### 나. 국내법률에 의한 면허, 허가, 등록, 지정,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해당 법에 따른 면허 등을 받아야 함

\* 인허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는 기업지원플러스 (<http://www.g4b.go.kr>)  
- 사업내용 변경 - 업종별 인허가 안내에서 확인 가능

#### ※ (참고) 확인 필요한 업종 및 관련 법률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운송업 : 철도사업법, 여객자동차법, 해운법, 항공사업법
- 음식점·카페 등 : 식품위생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 소매업 : 유통산업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서비스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목욕탕업, 온천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온천법
- 보험 및 금융업 : 보험사법, 보험종목별 금융위원회 허가, 외국환거래법,
- 교육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다.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관광진흥법 제7조 적용)

- ①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것**

- ①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제출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련 설명**

-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의미)
- 매출액 규모 : 특정 기준 없음(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50% 기준 적용)
- 매출액 기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름.
- 신규사업체 :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하여 국세청 신고 가능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해당 기간의 매출액만큼을 분석하여 50%가 넘으면 인정 가능.
- 검토방식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한 검토방식 등은 별도 규정하지 않음. (사업자의 자율 판단)  
[예시] 사업체에서 직접 매출액을 분석하여 분류·작성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섭외한 후 검토 요청
- 제출서류 : (붙임 2) 매출액 명세서 및 검토의견서(서식 변경 가능)

②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내 사업장 운영 관련 설명**

- 도내 관광지 및 관광단지 현황
  - 관광지(41) : [춘천] 호반, 구곡폭포, 청평사, [원주] 간현, [강릉] 옥계, 주문진, 연곡, 등명, 대관령 어흘리, [동해] 무릉계곡, 망상, 추암, [태백] 구문소, [속초]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삼척] 장호, 맹방, 삼척해수욕장, 초당, [홍천] 팔봉산, 홍천온천, [횡성] 어답산, 유현문화, [영월] 고씨동굴, 영월온천, 마차탄광문화촌, [평창] 미탄마하생태, [정선] 화암, 아우라지, [철원] 고석정, 직탕, [화천] 광덕계곡, [양구] 후곡약수터, [인제] 내설악용대, 방동약수터, 오토테마파크, [고성] 송지호, 삼포 문암, 화진포, [양양] 오색, 지경
  - 관광단지(14) : [춘천-홍천] 라비에벨, [춘천] 신영, [원주] 오크밸리, 더네이처, 루첸, [속초] 설악한화리조트, [홍천] 홍천비발디파크, [횡성] 웰리힐리파크, 횡성드림마운틴, [평창] 휘닉스파크, 용평, 대관령알펜시아, [고성] 델피노골프앤리조트, [양양] 국제공항
- 인정범위 :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신규창업하고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체도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장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③ 관광진흥법(제48조의10 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 **한국관광품질인증 관련 설명**

- 인정범위 : 유효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로 선정되었음을 증빙한다면 인정 가능
- 제출서류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한국관광품질인증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 **우수 관광사업 관련 설명**

- 인정범위
  -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선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모전에 선정된 해당 상품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과거에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우수관광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까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면 인정
  - 공모전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선정한 경우,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인정 가능
- 제출서류 : 선정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공문 또는 공모선정결과 등 서류)

- ⑤ 시장·군수가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관광지 및 숨은관광지 등으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숙박·음식 등 관광객을 위한 영업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체 관련 설명

- 인정범위 :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장·군수가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체는 인정 가능
- 제출서류 : (붙임 3) 관광 관련 사업체 인정 확인서(시장·군수가 해당 업체를 관광 관련 사업체임을 인정하는 의미의 공문이면 서식 무관 인정)\*
  - \*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자율 판단.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

**마.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 관광객의 안전 확보 관련 설명

-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관광객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사업체 시설 관련 안전점검표,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소방관련법 준수 여부, 안전교육 준수 여부, 시설 노후화 여부 등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 ✓ 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관광진흥법」 상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및 기타 관광사업의 등록·허가를 의제하는 것은 아님
-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으로 등록·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붙임1

# 관광산업특수분류표

※ 기존 특수분류표에서 관광진흥법상 업종은 제외하고 정리한 자료임.(기존 특수분류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 및 예시는 부연설명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님)

분류명	분류정의
<b>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b>	<b>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b>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 상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관광인증 쇼핑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종합소매업
관광 비인증쇼핑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소매업은 아니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대중 및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b>관광 운수업</b>	<b>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설비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b>
관광 철도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열차, 테마열차
도시간 철도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객철도운송(도시간), 일반여객운송(철도)
도시내 철도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지하철운송, 모노레일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버스운영, 버스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버스운영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관광 여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기타 산업활동 * <예시> 공항버스운영(정기노선), 리무진버스, 셔틀버스
시내외버스 운송업	도시 및 군의 일정행정 구간 안, 또는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고속버스, 시내노선
택시 운송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됨 * <예시> 택시운송, 승용차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운송
수상운송업	낚시 선박 임대, 잠수선 임대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운송업 * <예시> 낚시선박임대, 잠수선운영, 범선운영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강, 호수, 항만 내에서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내륙여객선임대(승무원 딸린), 내륙수상택시, 여객운송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항공여객운송(정기)
관광 항공 부정기 운송업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 포함) * <예시> 항공여객운송(부정기), 경비행기, 운송항공기임대(조종사 딸린)
<b>관광 숙박업</b>	<b>관광객의 숙박 또는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또는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b>
산림휴양림업	전국에서 수림이 빼어난 곳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청이 조성한 국민휴식공간에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예시> 숲속의집, 휴양관, 연립동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여행자에게 침실을 제공하고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 * 부엌, 샤워룸,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
레지던스 호텔	호텔급 서비스에 다양한 편의시설, 취사시설, 주거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중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말함. 한두 달 정도 머물 외국인, 외지 직장인, 유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며 숙박료는 호텔보다 저렴해야 함 * 레지던스 호텔은 숙박업(생활)으로 영업이 허가됨
관광 인증 모텔업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 * <예시> 품질인증모텔
관광 비인증 모텔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
민박업	일반 가정집에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예시> 민박시설운영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청소년수련원(숙박시설 갖춘), 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춘)
<b>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b>	<b>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즉석식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콜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b>
관광 일반음식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업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산업활동 * <예시> 관광지, 관광단지 내의 커피전문점, 제과점
기타 관광 주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b>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b>	<b>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b> * <예시> 관광안내소, 카플체계운영, 여행자안내서비스 등
<b>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b>	
박물관 운영업 (미술관 포함)	일반대중에게 순수과학물, 응용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역사박물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과학관, 천문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이 포함됨 * <예시> 식물원, 동물원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 * <예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운영
기타 관광지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 * <예시> 천연동굴관리운영
농어촌 체험 및 생태관광업	농어촌 마을에서 2차 산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에게 체험학습 및 생태학습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경주장 운영업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자동차경주장(F1), 투우장(소싸움),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골프장 운영업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음 * <예시> 골프장, 골프강습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음 * <예시> 스키장, 스키강습, 스키장비임대
낚시장 운영업	관광활동의 일환으로 실외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유료낚시터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보트대여) * <예시>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 오락용 보트임대, 해수욕장운영, 요트장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레크리에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b>관광 건설업</b>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관광 관련 사무 및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상업 건물 건설업: 상가·백화점·쇼핑센터 등 관광객이 찾는 시설 건설업, 휴양 건물 건설업: 호텔·숙박시설(별장, 콘도, 산장) 건설업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주차시설, 터미널, 관광토목건설업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관광 택지 조성공사 등의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활동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됨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용지를 제외한 스타디움 또는 경기장 같은 레저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공연·집회장소건설업, 경기장·운동장건설업
<b>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b>	
레저용 의복 소매업	남녀용 운동복, 수영복, 골프의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골프의류, 등산복, 수영복, 스키복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등산장비(텐트포함)소매, 골프장비소매, 스킨다이빙 및 스쿠바장비, 스키장비, 캠핑 및 하이킹장비, 수렵 및 낚시용 장비 소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 * <예시> 자전거유통 및 소매, 개인용 운송장비 유통 및 소매(비동력식)
관광용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관광을 목적으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용 액세서리 소매, 여행용 가방 소매, 트렁크 소매
<b>관광보험및금융 서비스업</b>	
여행자 보험업	여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도난 및 사고에 따른 여객,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자보험
여행자 수표 발행	은행을 위해 수표의 현금화, 여행자 수표의 발행 등과 같이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자수표발행
환전소	은행을 위해 외환교환서비스와 같은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환전서비스, 외국환서비스
<b>레저장비업</b>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카메라 소매, 디지털카메라 소매, 소진필름 소매, 사진장비 소매
레저장비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스키(장비)임대, 자전거임대, 물놀이기구임대, 카누임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상업용보트, 모터사이클, 경비행기, 오락용선박임대, 유람선대여(운전자 없이)
<b>자동차 임대업</b>	
캠핑카임대업	운전자 없이 캠핑카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관광용 자동차임대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용승용차(렌트카)임대, 리무진임대

일반 자동차 임대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b>관광 교육서비스업</b>	
관광 전문 교육기관 (대학교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한 관광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기관
관광 전문 교육기관 (고등학교)	인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고등학교 * <예시> 관광고등학교, 조리과학고등학교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 <예시>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레크레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 * <예시> 바둑교실
<b>기타 서비스업</b>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CD/DVD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여행 정보작성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됨.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거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 * <예시> 지도, 가이드북
통역서비스업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온천탕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족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온천탕, 온천사우나 운영, 찜질방(황토방 포함)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광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
<b>관광 연구 개발업</b>	<b>관광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b>
<b>관광 공공기관</b>	
문화 및 관광행정	문화 및 관광관리행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예시> 문화 및 오락시설 관리, 관광시설의 허가·규제·검사, 여행자 안내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관세행정	금융, 재정, 과세 및 경제정책을 수립·관리하는 기관 * <예시> 면세, 관세청 등 관광여행객들의 관세업무 관련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외교정책과 대외통상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기관 * <예시> 비자발급, 관광 관련 영사업무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시민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각급기관 * <예시> 국가보안담당
<b>관광 단체</b>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회원 간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 <예시> 관광사협동조합, 관광관련 학회, 관광관련 협회
여행클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체 * <예시> 여행클럽, 관광지원봉사단체, 여행동호회, 레저활동동호회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관광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국내 및 외국기관 * <예시> 주한외국대사관, 주한외국관광청



## 매출액 명세서

업무 담당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기준연도(전년도) : 20 . . ~ 20 . . )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객과의 거래	매출액
1. 000 여행사와의 거래	백만원
2. 000 호텔과의 거래	백만원
3. 외국인 거래	백만원
4. 온라인 매출 중 관광객 거래	백만원
5. 일반 관광객 거래	백만원
6.	백만원
A. 관광산업 매출액 총계 (1~6의 합계)	백만원
B.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중 관광산업 매출 비중(A/B)	%

「관광진흥법」 제78조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 관광 관련 사업체 인정 확인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업종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상기 업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추천관광지(숨은 관광지) 내에서 관광객을 위한 영업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본 사업체를 관광 관련 사업체로 판단하였기에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검토	시군명		부서명	
	담당자	(직위)	(성명)	
	확인자	(직위)	(성명)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4조 제7호에 대한 기준수립(안) 의견조회

기준수립(안)	검 토 의 견	
	수 정(안)	수 정 사 유